윤 리 헌 장

2003. 4. 21.

한화케미칼㈜

전 문

▣ 우리 한화케미칼 임직원들은 한국 석유화학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아시아 지역 리더로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正道經營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신의와 공정성을 기업경영의 제일 덕목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배격한다.

2.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공영을 위해 고객, 주주, 경쟁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력한다.

3. 공정한 거래를 통해 창출한 건전한 富와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문화, 고용 증진에 기여한다.

4. 환경안전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생태환경의 보전에 힘쓰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5. 公私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회사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윤 리 강 령

▣ 고객/주주/임직원의 만족을 추구하고, 협력회사/경쟁사와 신의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正道經營을 실천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은 한화케미칼㈜의 正道經營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윤리강령은 한화케미칼㈜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향응 · 접대 : 식사, 주류, 향락, 오락(골프 등 포함) 등의 受惠를 말한다.
③ 편의 : 금품, 향응·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 제공, 각종 행사지원, 관광 안내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④ 협력회사 : 한화케미칼㈜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⑤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법인/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 내의 상하 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⑥ 불가피한 경우 : 본인 부재 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친인척/지인을 통한 수수가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⑦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금액으로 제공자의 순수성,자발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4조(고객 존중)

고객 존중을 통한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극대화 시킨다.

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③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④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제5조(고객과의 약속 이행)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이 된다.

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진실만을 말한다.

② 전화응대, 방문상담, 배송, 고객불만 등 판매 기본행위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문제 발생시 적극적 대처로 고객 및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①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제7조(고객의 이익 보호)

고객의 이익 보호를 통해 相生의 경제활동 유지에 노력한다.

①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②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3장 법규 준수와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기업활동이 영위 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경쟁한다.

제8조(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기업활동이 영위 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해외 주재 임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한다.

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②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③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근거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활용하며, 비록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4장 협력회사와 상호발전 추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제10조(공정한 거래)

①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 대해 한화케미칼㈜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

1.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제11조(부당행위 금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① 고정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②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③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④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12조(상호발전 추구)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相互 노력한다.

②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相互 공유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한화케미칼㈜ 임직원은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부단한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개인 및 회사의 相互 발전에 기여한다.

제13조(기본윤리)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한다.

① 한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③ 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禁한다.

⑤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⑥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한다.
2.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회사와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⑦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전산 관련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제14조(공정한 업무수행)

최선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며, 정직·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①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反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③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하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차상급자, 담당 임원, 윤리경영실천 사무국)에 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⑤ 상기 ④항 포함 윤리경영에 反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협조자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실천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분보장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

① 직원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직원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受惠하지 않는다.

③ 직원상호 간 선물 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2.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 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

④ 직원상호 간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6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 피해 및 회사의 기업이미지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①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②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③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음담패설을 삼간다.

⑤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제17조(상호존중)

모든 임직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존중을 통해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

②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한화케미칼㈜는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

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③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④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에 노력한다.
⑤ 임직원이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
③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한화케미칼㈜는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20조(올바른 기업활동)

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② 국민경제에 害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1조(주주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②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주주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한다.

제22조(사회발전에 기여)

공정한 거래를 통해 창출한 건전한 富와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①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 한다.
③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제23조(환경경영)

ISO – 14001 환경경영을 통해 체계적 환경보호를 추진하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

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②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
③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24조(정치관여 금지)

한화케미칼㈜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개인 신분으로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공헌함에 대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①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어떠한 선거의 후보자, 정당 등에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 시기)
이 윤리헌장은 2003년 4월 2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금지)
이 윤리헌장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행동지침)
윤리헌장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포상 및 징계)
윤리헌장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제5조(상의 및 자문)
임직원들이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담당 임원 또는 윤리경영실천 사무국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제6조(해석 및 적용)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천 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또한 윤리헌장과 행동지침 이행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이익 상충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